

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. 8. 27 선고 2015가단1300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
말소등기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5. 8. 13.

판결 선고 2015. 8. 2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2011. 9. 5.
접수 제392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 : 자백간주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판사항병호

별지